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Maria									
세부사업명	조사료생산기	반확충					세목	자치단 및 민건	
내역사업명	-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 지원(292) -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부담금 지원(293) - 산지생태축산농장 기계장비구입 지원(291) - 산지생태축산농장 컨설팅 지원(294) - 산지생태축산농장 교육·홍보 지원								19
사업목적	유휴 산지(山 및 동물복지	,				-	-	•	두산
사업 주요내용	산지생태축신 기계·장비구입						부담금, 킨	선설팅비용	· ,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 제3조제3항,					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H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인 : 「축 ○농업법인 : 농업회사법 ○생산자단처 ○지방자치단 「지방공기업	「농어입 인 등 : 「농입 체 등:	업.농어촌 *운영실 업협동조합 「지방자기	및 식품신 적이 1년 합법」에 따 치법」에 저	업 기본(미만일)라 설립 2조에 [법」에 따 경우도 된 지역 I른 시.군	라 설립[지원 가: 농·축·닉	된 영농조합 능 남협 등	합법인,
지원한도	한도 내에/ (초지조성투 천원을 기준 포함하여 용 (컨설팅) 기 (기계·장비) 지자체장이 (기반시설)	○(초지조성) 30ha기준으로 1ha(10천㎡)당 8,185천원('19년 경운초지 조성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 ○(초지조성부담금) 3ha 이상의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1ha당 10,000 천원을 기준으로 지원형태(국.공유지와 사유지 구분. 사유지는 기반시설 지원항목에 포함하여 융자 80% 지원)에 따라 지원(1ha 미만은 절사) ○(컨설팅) 개소당 15,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기계·장비) 호당 15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방목시 필요한 기계·장비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추가지원 가능 ○(기반시설) 건당 지원한도 없이 총 소요액의 80%까지 융자 지원 ○(교육·홍보) (재)축산환경관리원이 주관으로 예산 범위 내 시행							
재원구성(%)	초지조성 초지조성부담금 컨설팅 기계·장비 기반시설 교육·홍보	국고	50 40 40		30 30 30 30 -	융자	50 - - 30 80	자부담	30 30 30 30 2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18년 275	+	9년 09	(단위 : ⁵ 2020 709	년	
단	│ 당기관		담당.	과		담당자		연락처	ł
	6 · 1년 · · · ·		로 모으 축산환경			남기헌, 김소연 044-201-2352, 2354			-
신청시기	매년 1~2월, :	수시				시행기	2 L	시도, 시급 축산환경곤	군구,

관련자료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

I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서, 산지를 활용하여 초지를 조성하거나 임간 방목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자
- 초지 또는 임간방목지의 기준면적은 3ha 이상으로 하되, 사업계획서에 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운영 후 3ha 이상으로 초지 또는 임간방목지의 면적을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1ha 이상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일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등록한 자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
- 지방자치단체 등 : 「지방자치법」에 제2조에 따른 시·군·구 등 지방자치 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
- 우선순위
- 당해연도 지정농장(평가점수 80점 이상) 중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자
- 당해연도 지정농장(평가점수 80점 이상) 중 평가점수가 높은 자
- 당해연도 선정농장(평가점수 80점 미만) 중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자
- 당해연도 선정농장(평가점수 80점 미만) 중 평가점수가 높은 자

《 지원 제한 》

◆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초지법,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에서 제외
 * 다만, 동 제한규정은 '20년 법령위반자부터 적용하되 '19년까지 법령위반자에 대해서는 후순위 지원)

형벌 및 처분 내용	지원제한 기간
징역 (집행유예 포함) , 벌금	3년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2년
사용중지)	
	1년
과태료(1회) , 시정명령 등 기타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행정처분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처분 결정시 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3.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말, 닭, 오리, 산양(염소)·면양, 사슴, 토끼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대, 측량수수료,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비, 초지용 울타리 설치비 등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

◆ 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등 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0°이하	100cm	5%이하	사양토, 양토
2급지	21 - 30	99 - 50	6 - 20	식양토, 식토
3급지	31 - 35	49 - 30	21 - 30	사토, 중점토
4급지	36 이상	29 이하	31 이상	입사질토

-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
-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기계화하기 위하여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 초지용 울타리 설치
- ◆ 초지에 대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 제고
- ◆ 대상시설 : 초지 내·외곽 경계 울타리, 철재앵글, 콘크리트, 나무 등 지주 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 초지조성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 내의 축사, 울타리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외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 초지를 중·상급 초지로 보완하거나 상급초지를 지속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 초지조성부담금 :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관련 전문기관 용역비용,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법정 비용 및 부담금(국유지·공유지에 한함. 사유지는 동일 내용으로 기반시설 지원 항목에 포함하여 융자 80% 지원)
- 컨 설 팅 : 초지 조성·관리·이용, 축종별 시설·분뇨처리, 생태보전, 사업 타당성 용역 등 분야별 컨설팅
- 기계·장비: 가축사육 및 방목에 필요한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 기계·장비
 -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③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항목 및 그 외 별도 추가 장비 지원 (예: 급경사 지역의 산지 초지 이동식 시비시설 등)
- 기반시설
 -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 개설, 목장 내 도로 개설, 비가림 시설 등
- ◆ 용수개발 : 지하수 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 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 ◆ 전기시설 :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 시설이 필요한 목장(초지 내 전기시설에 한함)
- ◆ 진입로 개설 : 초지의 진입도로, 목장 내 도로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
- ◆ 비가림 시설 등 : 초지 내 가축 대피시설, 수조 및 저수탱크 등

《 우선지원 가능 사업 》 —

◆ 직접지원 가능 사업 외의 기타 사업(사일리지제조비, 종자구입비, 시·도 가축방역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사업,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은 개별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반영

5. 지원형태

- 초지조성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⑤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과 동일
 - 초지조성 지원 시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는 없음. 다만.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
- 초지조성부담금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컨 설 팅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기계·장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자부담 30%
 -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
 -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기반시설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자부담 20%
 -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초지조성은 30ha기준으로 1ha(10천m²)당 8,185천원('19년 경운초지 조성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
 - * 초지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초지조성 면적이 30ha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적에 비례하여 지원 가능

- 초지조성부담금은 3ha 이상의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1ha당 10,000천원을 기준으로 5. 지원형태(국·공유지와 사유지 구분. 사유지는 기반 시설 지원항목에 포함하여 융자 80% 지원)에 따라 지원(1ha 미만은 절사)
 - * ha당 부담금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으로 함
- 컨설팅은 개소당 15,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기계·장비는 호당 15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방목시 필요한 기계·장 비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추가지원 가능
- 기반시설은 건당 지원한도 없이 총 소요액의 80%까지 융자 지원

7.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 및 관리 등

- 산지생태축산농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
 - (지정농장)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로서, 사업비 지원과 별개로 교육·홍보사업을 통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의 지정서 발급, 현판 제작 보급,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산지생태축산농장 로고 사용 허용, Biz-컨설팅, 자문위원 컨설팅(초지조성, 사양관리, 6차산업 부문), 온라인 홍보 등 각종 혜택 부여
 - (선정농장)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비 지원 및 자문위원 컨설팅(초지조성, 사양관리, 6차산업 부문)
 - (재지정) 3년마다 지정농장에 대해 재지정 여부를 평가하며, 선정농장의 경우 지정농장으로의 전환을 요청할 경우 수시로 평가하여 지정 가능
- 신규 농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신규 신청 농가와 분야별 자문위원을 1:1로 연결하여 컨설팅 지원
 - (방법) 사업신청시 요청하면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자문위원과 1:1 연결
 - (자문위원) 축산환경관리원에서 교육·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초지조성, 사양관리, 6차산업 분야별 전문가를 매년 위촉
 - 산지생태축산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당해연도 및 차년도 사업을 신청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분야별 전문가의 1:1 컨설팅 지원 가능

Ⅱ /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19.12월)

시・도(시・군)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20.1월)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산지생태축산 농장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20, 1월)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

- 시·군은 사업대상자의 "산지생태축산농장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추천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 시·도는 시·군으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0.3월)
- 선정방식 : 전문가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서면평가 등의 방법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 추천방식 : 축종별로 3순위까지 추천하되, 지역별 경쟁력이 있는 소수가축은 우선적으로 추천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검토 후 서면심사,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심사(필요시 선정평가위원회 설치·운영) 평가('20. 3~4월)
- * 현장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 산지생태축산농장 현장조사표를 활용하고, 필요시 사후관리 참여기관 관계자 및 자문단 위원을 현장조사에 참여시킴.
-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20, 4월, 이후 수시)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자문위원을 현장조사에 참여토록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은 예산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본 지침서의 기준에 적합한 농장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지정 할 수 있음.
- 다만,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 현장평가표"에 의한 평가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지정서 발급)
- * [별지 제4호서식]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 · 도(시 · 군)

-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본 지침에 따라 사업 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사업대상자(보조 사업자)에게 통지
- 각 시·도 책임 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 단가 및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 시는 시·군 판단 하에 「축산발전기금 운영 요령」 등에 따라 자금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사업비 배정 통보('20. 4월~)

시 · 도(시 · 군)

○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군별 사업비 배정('20. 4월~), 시·군은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사업비 집행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제와 연계하여 분뇨처리, 질병 및 위생관리를 통해서 산지생태 축산농장을 운영
- -(분뇨처리) 방목축산에 따른 분뇨의 자연순환 처리 또는 퇴·액비 전환을 통한 적정하게 관리
- (방역관리) 사람과 차량출입 등에 대한 차단방역 및 방목사육에 따른 질병피해를 방지
- (위해요소중점관리)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위해요소 사전관리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 친환경·동물복지를 고려한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
- (친환경축산물 생산)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한 자연순환형 축산 (유기사료)을 통한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
- -(동물복지) 동물의 5대 자유원칙(배고픔, 불편함, 질병, 고통, 행동표현)에 따른 사육환경 및 관리 추진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지급신청 시 인센티브를 받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 식품부로부터 받은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서 사본 제출(대상자로 선정된 것만으로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음)

시 · 도(시 · 군)

- 사업계획서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수시로 현장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지원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확인
- 시·군에서는 사업 진척도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융자기관에 통보, 사업비 집행(매월 소요액을 시·도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사업완료시 개별사업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또는 미집행 처리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관계규정에 따라 관리
- 사업대상자가 산지생태축산농장을 운영하면서 분뇨처리, 질병·위생관리, 친환경·동물복지 등의 이행여부를 준수하는지 현장점검 확인(반기 1회)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사후관리기간에 따름.

○ 보 고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직접사업 또는 연계사업에 대한 집행 실적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고(사업종료 즉시)
-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의 정산은 개별사업에 따라 보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 시 보조사업의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계규정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

농협경제지주

○ 시·도(시·군)와 협조하여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 기계·장비 구입비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이중지원 등을 지도·점검하고, 필요시 지원자금 회수 등 조치

(재)축산환경관리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 및 선정, 운영실태 점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 온라인 홍보 등 지원
- 컨설팅지원팀을 구성하여 신규 신청농가, 관심농가, 부실관리농가 등에 대해 상시기술지원 등 경영·기술·제도 등 컨설팅 지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대상 가축분뇨 자원화(퇴비, 액비) 및 악취저감에 관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산 림 청

-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국유림 사용허가(대부) 등 제도개선 추진
- 보전국유림 내 가축방목을 위한 허용범위 검토(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 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등과 협의)
- 산지초지 조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원

농촌진흥청

- 산지초지 조성 및 관리 이용기술, 축종별 산지초지 방목 이용기술, 산지축산 환경보전 및 방목가축 질병관리기술 등 연구
- 현장적용 기술의 보급 및 컨설팅 등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지급 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산지생태축산농장 으로 지정받은 농가는 인센티브 부여([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일정
- 점검 대상 및 일정 : 시·군(도별 1개 이상). 연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대상자 선정 적정성, 사업비 항목별 적정 집행 여부

나. 제재조치

시・도(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 [별지 제6호서식]의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 관리카드"를 작성·비치(시· 군)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조사 실시
- [별지 제7호서식]의 "산지생태축산농장 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의 기계·장비 융자 및 보조에 대한 이중지원에 대해서는 동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 조치 후 농림 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에서는 농협경제지주와 협조하여 연 1회 이상 이중지원에 대한 점검실시
- * 시·도(시·군)는 보조지원 받은 산지생태축산농장에 대한 상호명 등 관련 정보를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보조지원 받은 산지생태축산농장이 융자를 받고자 할경우 해당 시·도(시·군)에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경고 조치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관계규정 준수

Ⅲ / 2021년도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 사업내용, 지원조건 및 단가 등은 변경될 수 있음

1. 2021년도 사업 신청

- 2021년도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지원 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산지생태축산농장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년 사업과 동일하게 시·군에 신청('20. 1월)
- 시·도는 시·군으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2021년 사업신청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0.3월)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도별 사업신청 수요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21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 2020년 사업대상자 선정과 동일하게 2021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2021년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동일조건일 경우 2020년에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

산지생태축산농장 사업계획서

I. 일반현황

○ 대 표 자 : (HP:)

○ 설립연도 :

○ 소 재 지 :

	II .					
		초	지		임간병	방목지
호지면적 초지면적	계	자가	임차 (국·공·사유지)	자	가	임차 (국·공·사유지)
(m²)						
	관리사	축사	축산시설	기계·	장비	기타
보유현황 (㎡/동/대)	0 동 (m²)	0 동 (m²)	0 동 (<u>퇴비사</u> m²) (m²)		- 대 - 대 - 대	
	한우·육우· 젖소	닭	오리	염소· 면		토끼 등 (소수가축)
현재사육 축종 (마리수)	한우 마리 육우 마리 젖소 마리			염소 산양 면양	마리 마리 마리	
	매출금액	순이익금액		자산	규모	
매출현황	<u> </u>		자산			부채
(1년간, 백만원)						

Ⅱ. 사업계획서

가. 개 요

0

 \bigcirc

나. 투자계획

 \bigcirc

 \bigcirc

(단위:백만원)

						ен• чее /
	구 분	'20	'21	'22	'23	'24
그비	보 조					
국비	융 자					
지	방 비					
자	부 담					
추가	자부담					
	계					

다. 여	산확보	방안
------	-----	----

 \bigcirc

0

Ⅲ. 세부사업 계획

가. 사업대상 초지 분포도

 \bigcirc

 \bigcirc

- * 전체 도면(관련자료 첨부)
- *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장기임대계약 서 등(관련자료 첨부)
- * 예정부지에 대한 시장·군수의 인허가 등

나. 초지·임간빙	목지(신규·L	보완) 조선	성계획				
0							
0							
구분	<u>.</u>	ı	면 적(m²)		<u>-</u>	금액(친	선원)
* 조성계획 도 * 조성계획 현	면 (관련자료 * 황자료	첨부)					
다. 향후 사육두	수 계획						
0							
0							
축종	현 재		향	후 사육5	투수		
70	사육두수	'17	'18	'19	'2	:0	계
라. 컨설팅 계획	1						
0							
0							
마. 기계장비 구	'입 계획						
0							
0							
기계·장비명	회사명	제작	년도(번호)	치=	수	금	액(천원)
						1	

기반시설명		사업내용 금					금액	(천원)
목로개설(km)							
용수개 발(공)								
전기시설(km)							
부지정리(ha))							
기타								
사. 타 사업과 ○	연계추진 🤅	계획						
			ス	 원규모(천원	<u></u> 실)			지자체
사업명 	사업명 계		 조	융자	지방비	자-	 부담	관심도
아. 조사료 확5 ○ 산지생태축		조사료	를 (안정적으로	: 공급받여	아아	하므	로 조사료
업체(TMR 공급계약 ۶	,		통센	터, 조사효	로경영체 .	또는	재배	농가)와의
업체명 (농가명)	주 소		종	·류(품목)*	계약물 (면적		겨	약기간

* TMR 사료, 조사료, 사일리지, 건초 등

바. 기반시설조성 계획

 \bigcirc

 \bigcirc

0	
0	
0	
0	
	* 예상 수익성 분석 등 포함하여 설명
V.	향후 운영방안
0	조사료 확보 계획, 가축사육환경, 사업의지(초지 확보, 사육두수 확대, 자부담 계획 등), 타사업과 연계추진, 지자체 관심도 등 사업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0	
0	
0	
	* 실현성 또는 가능성 위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수반되어야 함.

Ⅳ. 사업효과(예상수익 등)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 평가표(지자체 평가)

업체명	대표자명	
지 역	주요축종	

구 분	세부항목	배점	득점	특점근거					
	○면적 m²			한우, 육우, 젖소, 말	염소,	유산양	소수가축	배점	
	- 자가지 m² - 임차지 m²			10만m²이하	5만m	l ^² 이하	5만m²이하	50	
	·국유지 m²	200		10~15만m²	5~10	O만m²	5~7만m²	100	
│ 조사료 │	·공유지 m² ·사유지 m²			15~20만m²	10~1	5만m²	7~10만m²	150	
확보	·사유지 m²			20만m² 이상	15만m	ı² 이상 1	.0만m² 이상	} 200	
	○조사료 자급률	200		· 40%이하 · 40~60% · 60~80% · 80%이상	: 100 : 150				
				점수	200	150	100	50	
				한우·젖소	3이하	4~5	6~7	8~	
	○가축사육 밀도 (도/ba)	200		염소·유산양	30이하	30~50	50~70	70~	
	(두/ha) 			엘크사슴	6이하	8~10	12~14	14~16	
				사슴	15이하	20~25	30~35	40~	
가축				* 소수가축 : 선 구분	0~8°	8∼15°	15~25°	구두 평가 25°이상	
사육환경	○개발부지의	100		경운초지	·적 ⁷	성: 100	10 20	25 10	
	적합성	100		불경운조시		통: 70 함: 50 함: 30			
	○시설설치 확충 정도	50		분뇨처리용수시설진입로 가* 여러 가	. 전기시 설 등	설 등 <i>></i> : 10		: 30	
	○사업계획서 (재정상태, 사업성	150		· 우수 : 15 · 보통 : 10	0				
사업확대 의지	등 종합평가) ○타 사업과의 연계 추진	100		·미흡 : 5 ·우수 : 10 ·보통 : 7 ·미흡 : 5	00				

조사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 현장조사표

조사일자 : 20 . . .

업체명	C	대표자명	
지 역		주요축종	

구 분	평가항목	매우 우수	우수	배점 보통		매우 미흡	평점	
지자체 평가의 적정성 확 인	세부항목에 대한 득점 및 득점 근거의 적정성 ○ 부지면적 공부 확인 ○ 조사료 자급률 증빙자료 확인(생산실적 등) ○ 개발부지 적합성 확인(경사도, 환경, 기후 등) ○ 시설설치 확충정도 확인(현행 및 계획 비교) ○ 가축사육밀도 확인(기타가축 경우 현장확인 필요)							
	100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및 적정성, 실현가능성, 추진일정, 사업점검 및 사후관리방안, 추진 인력 구성, 기대효과 등 종합검토		32	24	16	8		
농가 운영사항	□ 재무상태, 사업수행 의지, 이해도, 준비상황, 사업 여건, 사업실적 및 업체운영 체계 등	20	16	12	8	4		
개별 평가항목	 □ (법적적합성) 축산법, 환경관련법, 초지법, 낙농 진흥법, 사료관리법 등 관련 법규와의 적합성 □ (합목적성) 사업내용의 목적달성 가능정도 ○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 가능성 ○ 동물복지 사육환경 조성도 ○ 분뇨 등 자연순환 처리계획 ○ 방역위생관리 적합도 □ (사업수행) 사업규모 대비 사업비의 적정성, 축산 환경 개선노력, 사육두수의 적정성, 체험·관광 등을 연계한 6차산업화 가능성 등 □ (지속가능성) 사업 연속성, 주변으로 확대가능성, 타사업과 연계 추진도 등 	40	32	24	16	8		
	소계(B)	100						
평가자 의 견								
최종점수	(A+B)/2			100				
-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서(안)

농림축산식품부 제○○호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서

농장명:

대표자 :

소재지:

위 농장을 산지초지를 이용한 방목사육과 친환경 및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합니다.

(유효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2020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년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 계획 및 실적

	계 획					실 적							
구 분	사업량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기 기상비 가부담 기 기상비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사업비(천원)				사업비(천원)							
T E					TIBEHI		ж		축발기금		TIHLUI	TLEE	741
		계	보조 원	용자	소계	지방비	자부담	계					
①초지조성(ha) -신규조성 -기성보완													
②초지조성부담금 -내역													
③컨설팅 -내역													
④기계·장비 (대/트랙터 기준) -경영체, 생산단체 등 -농업인													
⑤기반시설 -용수개발(공) -전기시설(km) -진입로개설(km) -목로개설(km) -부지정리(ha) -울타리설치(km)													
합 계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 관리카드

1. 대 표 명 2. 설립연도 (지정연도) 3. 구성인원 4. 소 재 지 5.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6. 기계장비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계										
(지정연도) 3. 구성인원 4. 소 재 지 5.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6. 기계장비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계										
3. 구성인원 4. 소 재 지 5.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6. 기계장비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계										
4. 소 재 지 5.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6. 기계장비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계										
5.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6. 기계장비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구분 '15 '16 '17 '18 '19 축발 보조 보조 이 방비 지 방비 지 방비 자 부 담 이 나	계										
6. 기계장비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구분 '15 '16 '17 '18 '19 축발 보조 기금 융자 지 방 비 자 부 담	계										
가. 사업비(천원) 구분 '15 '16 '17 '18 '19 축발 보조 보조 기금 융자 이 방비 자 부 담	계										
구분 '15 '16 '17 '18 '19 축발 보조 기금 융자 지 방 비 자 부 담	계										
축발 보조 기금 융자 지 방 비 자 부 담	/1 										
기금 응자 지 방 비 자 부 담											
자 부 담											
계 계 I I I I I I I I											
나. 사업량(대)											
구분 <u>트랙터</u>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u>트레</u> 기타	계										
′15											
'16											
'17											
′18											
'19											
계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7. 초지(임간방목) 재배면적(ha)											
구분 '15 '16 '17 '18 '19	계										

산지생태축산농장 운영 지도·점검

구 분	점검내용	조치결과
○ 분뇨처리시설	○ 분뇨처리 적정관리 여부 등	
○ 방역·질병관리	○ 차단방역, 피해방지 등	
• НАССР	○ 위해요소 사전관리 등	
○ 환경보전 등	○ 가축 등에 의한 환경훼손 등 ○ 유기사료, 무항생제 축산 추진	
○ 사육환경 및 관리	○ 밀식, 방목 등 환경여건	
○ 기타	○ 운영상 보완·추가할 내용 등	

산지생태축산농장 로고

O 로고 의미: 산지생태축산 모델이 추구하는 본질적 의미를 담기 위해 주요 요소인 초지, 울타리, 사람, 자연, 동물을 조화롭게 구성함. 주요 축종인 한우, 젖소, 염소, 면양을 Shape으로 표현하였고, Green과 Sky blue는 자연과 하늘, Yellow는 동물, Red는 사람의 마음을 상징함. 축종을 둘러싸고 있는 실선과 굵은 선은 울타리와 넓은 초지(원)을 의미함

O 로고 TYPE A

상하조합 기본형



상하조합 응용형



죄우조합 기본형



죄우조합 응용형



O 로고 TYPE B

상하조합 기본형



상하조합 응용형



죄우조합 기본형



죄우조합 응용형

